

#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 1. 대상 펀드

- 하나 UBS 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A
- 하나 UBS 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C
- 하나 UBS 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채권혼합-재간접형]A

## 2. 발생일자 : 2016 년 04 월 01 일~30

## 3.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시행령제 93 조(수시공시의방법등)

제 3 항제 5 호에의거하여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가설정하고 1 년이 지난후 1 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 50 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 192 조 2(투자신탁의해지)

제 1 항단서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해지될수있다는사실을수시공시해야함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따라 1 개월공시 1 회시행후해당사실이변경될경우(원본액 50 억초과등) 추가공시

## 4.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 해당사항 없음